

오이시디 규제정책위원회(OECD RPC) 주관 정기회의 참석

2019. 11. 04. - 09.



1 배경 및 목적

1) OECD NER(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 참석

- 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이하 RPC)는 11월 5일 제13차 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이하 NER)를 개최
 - OECD NER은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70개 이상)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 과제, 혁신적 솔루션 등을 공유하는 자리
 - 제13차 NER 회의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혁신산업 규제 및 최근 규제품질 개선 대안으로 거론되는 Behavioural insights를 통한 규제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2) OECD RPC 연례회의 참석

- RPC는 11월 6일, 7일 양일간 제21차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신기술 규제 등 현재 규제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
 - 이번 RPC 회의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규제설계 및 정책 의사결정의 중요성, 신기술 규제 등 규제이슈 현안에 대해서 각 국의 의견과 경험 등을 공유
 - 또한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기관간 국제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OECD의 규제개혁 원칙*의 이행사례와 성과(사례국가: 페루) 소개할 예정
 - *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on Regulatory Policy and the Toolkit
- KDI 규제연구센터는 해당 행사의 참석을 통해 세계 각 국의 최근 규제제도 개선 동향과 성과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규제제도의 개선방향 및 향후 연구과제들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각 국의 경험과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을 추동할 미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탐구
 - 각 국 규제 기관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규제제도 연구의 기반 마련

2 출장개요 및 일정

- 예산명: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 기간: 2019년 11월 4일(월) ~ 2019년 11월 9일(토)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 프랑스 파리
- 출장자: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장 전문위원 이상무,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 연구원 조정근 (이상 총 2명)

3 주요 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1/4(월)	14:00~18:30	출국(인천→파리)	KE 901
11/5(화)	09:30~18:00	RPC 연례회의 1일차(NER) -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 NER과 규제기관간 최근 성과 - 규제집행에 있어 BI 적용 - 아일랜드 및 페루 규제 성과 사례	OECD Conference Centre
11/6(수)	09:30~18:00	RPC 연례회의 2일차 - 국제적 규제협력 - 영국의 국제 규제협력 사례 - 근거 기반 정책 의사결정	
11/7(목)	09:30~18:00	RPC 연례회의 3일차 - 규제 정책에서 의회의 역할 - 신기술 규제 - 멕시코 기술 규제 사례 - 페루의 환경 규제 사례 - 동남아시아 규제 개선 사례	
11/8(금)	21:00~15:55 (9일)	귀국(파리→인천)	KE 902

4 주요 논의내용

▲ 1. OECD RPC 주관 NER 참석

- 개요
 - 일시: 11월 5일(화) 09:30 ~ 18:00
 - 장소: OECD내 컨퍼런스룸
 - 참석: 각국 규제기관, 대한민국 오이시디 대표부, 이상무
분석평가팀장, 조정근 연구원

주요 내용

1. 규제기관의 독립성 (Independence)

가. 배경

- OECD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이라는 이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2013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2013년부터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에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 2015년에는 26개국의 48개 규제기관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 과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분석 결과는 2016년에 "Being an Independent Regulator" 라는 제하의 보고서로 출간)

- 본 세션은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OECD의 분석결과와 지난 5년간 NER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의의가 있음.

나. 사무국 보고 내용

- (규제기관의 독립성) 독립성(independence)은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이

이해관계자 집단, 정치권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의미

○ 규제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서 이해집단의 포섭(capture)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초의 정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음

□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구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

○ 첫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규제정책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피규제자들에게 전달하여 규제정책에 대한 피규제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 둘째,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거리 두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OECD 사례연구에 따르면 규제기관 독립성의 정도는 일정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편성 시즌과 더불어 선거 시즌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각종 선거공약 등은 자칫 규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제기관을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

○ 셋째, 정부 부문과 거리 두기: 규제정책은 예산 등 정부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제정책 결정은 정부 부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수행할 수 있음.

○ 넷째, 규제 관련 전문지식의 축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전문가 집단을 확보해야 함.

□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단순히 관련 법률 제정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

① 규제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 정책 결정과 집행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과정이므로 동 과정에서 기관이 당연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②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립: 독립성이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즉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 집행 시 균형 잡힌 조치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함.

-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규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규제기관이 정부부처 내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제집행의 동력이 저감

- 또한, 규제기관들은 계획 및 성과 등에 대해 공개하는 문서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기술되어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순응도를 크게 훼손

- 따라서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와 메커니즘을 고안하여 시의적절하고 균형 잡힌 규제정책이 입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재정적인 독립: 규제기관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 재원을 규제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관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 OECD가 수행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정부 예산편성 시즌에 크게 훼손되는 경향이 있음.

④ 규제기관장의 독립성: 규제기관장의 선임과정과 선별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중앙정부가 규제기관장(혹은 이사회)을 선임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에 규제기관장은 정부부처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의 계기가 될 수 있음.

다. 패널토론 : 규제기관의 독립성, 도전과 과제

□ Scott Streiner (캐나다 교통감독원 의장)

-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정책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있으며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배제할 수 있는가가 중요
- 과거 캐나다 교통부문의 규제정책 사례를 돌이켜 보면 경우 정책 결정의 독립성이란 정책 결정의 탈정치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정책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첫째 법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임.
- 현실적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정부부처, 의회, 이해관계자, 소비자들과 원활한 소통과 이를 통한 상호견제를 통해 부적절한 개입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Ana Albuquerque (포르투갈 수자원 서비스 감독원, 이하 ERSAR)

- ERSAR은 포르투갈 내에 수자원과 관련한 모든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응용수를 공급하는 모든 기구들을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
- ERSAR은 정책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현황 및 정책 결정 과정, 성과평가, 기구의 활동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뿐 아니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
- 또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제기관의 성과 및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임.

□ Andrea Guerrini (이탈리아 에너지·통신·환경 감독원)

- 특정한 이해집단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규제품질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

- 규제정책에는 당연히 반대하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며 균형 잡힌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참여시켜 적절한 대안을 도출해야 함.
- ARENA는 환경 분야 규제에서 다양한 협의과정(consultation)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기술그룹들을 참여시키고 있음.
- 또한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정책 결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야 하며 법에 근거하여 규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권한도 보장해야 함.
- ARENA는 유로법을 및 국내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법이 정한 권한 행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독립도 보장받고 있음.

□ Gabor Kisvardai (헝가리 에너지·공공서비스 감독청, 이하 HEA)

- HEA는 헝가리 내 에너지 및 수자원 서비스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2012년에 관련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HEA는 관련 법에 따라 두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첫째, 이해관계자의 참여보장, 둘째 성과보고(의회보고 포함)
-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성과는 아직 없는데 이는 참여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
-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한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서비스 공급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공공자원 이용현황과 만족도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수립토록 하는 것인데 이는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HEA는 헝가리 통계청과 공동으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템플릿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과보고) 규제기관의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 특히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성과에 대해 언론이 제기하는 많은 질문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 그간에는 규제기관이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언론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HEA에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들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재구성하는 전문가팀이 있음.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성과보고를 법으로 명시한 것은 규제기관들이 새로운 정책환경에 직면했다는 것을 시사

- 그러나 두가지 사항은 규제기관이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일 것이며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임.

□ Charles Nancarrow (영국 Director of Trade and Regulation)

○ 규제기관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 이슈를 제기해 볼 수 있음.

① (성과 평가모델 개발) 규제와 다양한 소비자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함.

- 규제기관들이 추구하는 목표들 간에는 상충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음.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은 때로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다 좋은 거래 조건을 찾아 서비스 공급자들을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은 서비스 공급자를 거의 바꾸지 않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과 충돌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상충되는 가치들을 고려하여 규제정책들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② (성과평가 품질에 대한 평가) 규제 성과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이므로 규제기관의 고유한(marginal) 효과를 선별해내는 것이 필요

- 규제기관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규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당해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음.

- 규제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는 다양한 시장내 요인들로 인한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해 평가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 국가별 발언내용 >

□ (폴란드) 대중매체와의 소통은 규제기관들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로서 규제기관들은 미디어와 근거리를 유지해야 함.

○ 규제기관이 대중매체와 소통해야 하는 이유는 대중매체를 통해 시민사회가 규제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대중매체가 정책의 카운터 파트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규제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사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호주) 규제는 규제기관이 개입하려는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설계되어야 함.

○ 호주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들이 효율적인 비용(비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발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격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음.

○ 이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비용절감 노력을 견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생산성 증가는 경제 일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

□ (영국) 규제기관들의 업무와 성과는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대중매체에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

- 특히 소비자들의 편익을 대중매체가 다룰 수 있는 스타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데 대중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규제기관은 해당 사안을 적당히 은폐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임.

2. 신기술(emerging technology)과 규제

가. 배경

□ NER은 신기술, 플랫폼, 빅데이터 등이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및 데이터 견인 규제(data-driven regulation)와 관련한 논의를 수행해 왔음.

- 특히 제12차 NER에서는 신기술 등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이 규제기관의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과 더불어 규제성과 제고를 위해 규제기관들이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동 세션은 신기술과 이에 대한 규제의 최근 변화와 발전을 각국의 사례를 통해 공유함.

나. 패널토론 :

□ Christina Cifuentes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 ACCC는 2017년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및 광고시장, 특히 검색 엔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 특히 동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언론의 품질이나, 콘텐츠 개발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음.

- 거대 플랫폼 회사(구글 및 페이스북)들은 플랫폼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 미디어 및 언론 등 관련시장에 영향을 미침.

- 플랫폼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광고시장으로서 광고시장의 판도변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특히 언론 시장에 큰 변화

를 초래

-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지역 언론사들이 폐간했는데 이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광고시장의 기반을 바꾸어 놓았으며(예를 들어 지면광고 혹은 웹페이지 광고 중심에서 앱광고 중심으로) 기존 광고모델을 주된 수익원으로 했던 언론사들이 변화된 광고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

-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언론사들의 폐간 등 언론시장의 최근의 변화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임.

- 이외에 플랫폼으로의 개인 데이터들의 집중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Michael Mastier (Director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 디지털 환경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뿐 아니라 규제 패러다임의 진화를 견인

- 규제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관련 데이터와 연계하여 규제기관의 분석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는 규제 기관의 기존의 정책수단을 보완할 수 있음: 데이터는 경제주체 간 그리고 규제기관과 피규제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명령 지시적 규제를 지양하고 시장친화적인 규제의 도입을 가능케함.

-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소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당해 분야의 시장경쟁을 도모

3. BI(Behavioural Insights)를 활용한 규제 사례

가. 배경

□ BI는 심리학, 인지과학, 사회과학, 경험적 방법론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

여, 인간의 의사결정 동기와 그 원인을 밝히는 데 활용됨.

- 이러한 BI의 가치를 활용하여, 규제기관은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 설계를 할 수 있음.
- 본 세션에서는 스코틀랜드 수자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 및 태도에 관한 BI 연구 및 활용가치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가짐.

나. 사무국 보고 내용

- 사람들은 의사결정 시 여러 가지 편향(bias)이 존재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감.
- 편향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의력(Attention), 신념형성(Belief formation), 선택(Choice), 결정(Determination) 측면에 각각 또는 모두 존재하며,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의 원인으로 판단
-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BI 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 할 수 있음.
-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 및 귀납적(inductive) 방법론을 활용하여 증거기반(evidence based) 정책을 수립한다면, 정책(규제)의 순응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
- 대부분의 정책들은 연역적(deductive)이거나 가정(assumption)에 기반 모형을 통해 수립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고 볼 수 없음.
- OECD는 위와 관련해, 더 좋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BASIC' 원칙을 권고함.
'BASIC' 이란, 총 5단계의 정책입안 과정을 의미하며 각 철자는 Behaviour, Analysis, Strategy, Intervention, Change를 의미함.
- B, A, S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단계, I는 실험연구 등을 통한 근거수집 및 정책의 정치한 설계를 위한 단계, C는 실제 정책 시행을 의미함.

< 스코틀랜드 수자원 정책을 위한 ESRI 연구 내용 요약 >

- 스코틀랜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하여 수도 정책 입안에 필요한 근거들을 수집함.
- 온라인 조사와 대면 조사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두 가지의 조사 방식간 인구학적 요소에 차이가 없도록 적절히 조정함.
- 총 2개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연구는 ①시민들의 수도요금 가격변화 그에 대한 선호도와 ②비용과 효과측면에서의 수자원 정책의 선호도를 살펴 는 데 그 목적을 둠.
- 이 관찰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책 입안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 ① 시민들은 수도요금 인상에 어느 정도 우호적이었으며, 현재 못지않게 미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음. 그리고 같은 정보일지라도 표현의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도에 차이나 나타남. 또한, ② 수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용 증가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비용 및 시간 등)에 많이 노출 될수록 지불의사가(willingness to pay) 더 증가함.
- 사람들은 즉각적인 서비스 개선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개선 시기(5년, 10년, 25년) 사이의 선호도 차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됨. 또한 지불의사 증가는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정책옵션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보고됨.

다. 패널 토론

- Alan Sutherland (CEO, Water Industry Commission for Scotland, UK)
 - BI 방법론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가 확대되며 결국 이는 정책 입안과정시 권리행사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 Pete Lunn (Head of the Behavioural Research Unit at ESRI)
 -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간 상호작용

(interaction)이 매우 중요한데, BI 연구는 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

- 행동경제학자는 가정(assumption)과 모형(model)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와 검증,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 내면의 복잡성(complexity)에 초점을 맞춤.
-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학의 시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결론이 심심치 않게 도출됨.
- BI 연구가 어떠한 행동과 가치 등을 측정(measure)한다는 면에서는 서베이 조사와 유사하지만, BI는 인과성(Casuality)을 설명하는 데보다 중점을 둔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임.
- 실험연구에서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조건은 일정한(Constant) 상태에서 특정 관심변수의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를 측정
- 이를 위해 실험참가자들에게 묻는 설문 및 질문의 설계가 상당히 중요함. 즉, 이 설계의 질과 BI 연구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

▲ 2. OECD RPC 정기회의 참석

□ 개요

- 일시: 11월 6일(수) ~ 11월 7일(목) 09:30 ~ 18:00
- 장소: OECD내 컨퍼런스룸
- 참석: 각국 규제기관, 대한민국 오이시디 대표부, 이다은 사무관, 이효진 사무관(이상 국무조정실), 백진욱 사무관(이상 중소기업벤처부), 유규형 서기관, 이승우 사무관, 전승준 사무관, 김영식 조사관(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이종한 규제혁신연구실장, 우소현 연구원, 김진영 연구원(이상 한국행정연구원), 윤의열 연구원(이상 중소기업연구원), 이상무 분석평가팀장, 조정근 연구원(이상 한국개발연구원)

□ 주요 내용

1. 국제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가. 사무국 발표 내용 <국제 교역에서의 GRP와 IRC>

□ (배경)

- 2019년 8월 개최된 APEC 제12차 GRP 회의에서 OECD 무역위원회가 무역협정 내 모범규제관행에 관한 조사결과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2월 2일 공동작업단(Joint working party)에서 재논의될 예정임
- 향후 최종본은 칠레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APEC SOM1에서 발표할 예정

□ 무역협정 내 모범규제관행 및 국제규제협력 조항의 특징

- RTA(지역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내 모범규제관행 및 국제규제협력 조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1) 전통적인 모범규제관행 조항은 WTO의 TBT(무역기술장벽)와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협정을 기반으로 함
: TBT나 SPS의 특정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투명성과 국제표준 채택에 관한 WTO 협정 조항을 포함하거나 이를 심화함

2) 국제규제협력 관련 조항
: 국가 간 규제조화, 상호 인정 및 동등성, 국제 표준 사용, 투명성 등을 장려

3) 특정 산업분야 관련 장 또는 단서조항
: 의료기기, 의약품 및 화장품 생산 등 특정분야에서 규제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

4) 모범규제관행 또는 국제규제협력의 수평적 장 규정
: 범분야 모범규제관행 촉진 및 협정 당사자 간 규제 협력에 초점

□ 최근 무역협정 내 규제조항

- 최근 체결된 교역협정 및 협정 개정안에 포함된 모범규제관행 및 국제규제 협력 조항을 선택적으로 분석하였음
 - : 태평양 동맹 기본협정 개정안(PA, 2015),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 (CE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8),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2018), 뉴질랜드-싱가포르 CEP 개정안(2018)
- 조항들은 대체로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나,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됨
- (협정의 내용) 당사자 간 일명 ‘모범규제관행의 이행정도’에 따라 조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
 - (1) 모범규제관행 이행 정도가 강한 당사자 간에는 국제규제협정에 초점을 둠
 - (2) 모범규제관행 인정 수준이 다양한 국가간의 무역협정은 공통의 최소 수준의 모범규제관행 이행과 국제규제협력 조항을 포함
 - (3) 다만, USMCA는 당사자 국가가 모범규제관행을 강하게 따르고 있으나, 여전히 모범규제관행 이행 및 국제규제협력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범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수단들이 포함되며, 협정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규제수단을 특정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리스트 형식으로 규정
 - 무역협정 내 조항을 통해 권장되는 모범규제관행 수단은 OECD의 2012년 권고문과 흡사(정보교환, 국제표준사용, 국제협력, 상호인정, 국제포럼 참가 등)하며,
 - CETA는 나아가 "2.0 IRC 메커니즘"으로 진입하여, 공동 규제영향분석, 공동 표준 및 규제 개발, 데이터 수집 및 교환, 기존규제의 평가결과 교환 등을 규정함
- (법률상 지위) 대부분 구속력이 없으나, USMCA는 예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와 분쟁조정체계 적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규제기구의 설립) 분석한 5개 협정 중 4개는 조항의 이행 점검(CPTPP, PA) 또는 국제규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촉진(CETA)하는 역할의 별도 기구를 설립하였음

립하였음

- (모니터링) 위와 같은 상설 기구와 관련하여, CPTPP, PA, USMCA를 포함한 많은 협정에서는 당사자들의 협정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체계와 정기적으로 기구의 갱신을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
- (이해관계자 참여) CETA, CPTPP, PA, USMCA는 협정 이행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나. 각국별 토의내용

- (미국) 국제규제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위원회 간 협력이 중요함
- (BIAC) 국가 간 규제차이로 인해 무역이 10~15%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제규제협력이 중요함
- (Regwatch Europe) : 각국에 대한 OECD의 적절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칠레) WTO 조항 수준을 넘어서는 GRP 내용을 FTA 체결시 반영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전통적인 규제 정책의 3대 요소(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 평가) 이외에도 정치적·법률적 지지를 통한 강력한 규제 집행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2. 모범규제관행 원칙 :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가. 사무국 발표 내용(Eric Thomson)

- (배경) 규제영향분석 절차 자체로 정부 비용 발생
 - 경미한 규제의 경우, RIA 프로세스 자체가 비용편익분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음. 즉, 공식 절차 비용 때문에 규제나 정책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함
 - 판단기준(threshold) 또는 비례성(proportionality) 테스트는 규제영향분석 요건에 따른 규제 개수를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의 수행 범위를 변경하는 필터링 메커니즘임

□ (OECD 국가의 판단기준 테스트)

- 규제영향분석은 OECD 국가들에게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다양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 규제영향분석을 영향력이 큰 정책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의 국가에서만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주요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 테스트를 시행
- 더 많은 국가들이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

□ (OECD 판단기준과 비례성의 유형) 총 영향에 대한 정량 분석, 다중 기준 테스트(Multi-criteria test), 단일 기준 테스트(Single-issue test), 임의 또는 비례 테스트(Discretionary or proportional test)

- (총 영향에 대한 정량 분석) 분석 수준 또는 깊이는 사회에 미치는 총 영향에 달려있으며, 정책 입안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규제 개발의 예비 단계의 일환으로 총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해야 함
- (다중 기준 테스트) 규제영향분석의 깊이는 여러 주요 영역에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의 혼합을 기반으로 함
 - (기준의 예) 영향을 받는 사업체의 수, 특정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주요 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
- (단일 기준 테스트) 규제영향분석의 심도는 한 부문 또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하며, 비즈니스 비용이 특정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체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함
-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고 규제 감독기관이 다음 단계에서 분석 수준 결정

□ (관찰 결과)

- 판단기준 또는 비례성 테스트의 합리성이 불명확

- 대부분의 규제 감독기관은 특정 기준값과 관계없이 연간 100~200건의 규제 영향분석을 검토

- 테스트는 보통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조합임
- 양적 판단기준 값은 서로 상이하며 그 범위가 큰 폭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를 따름
- 그러나 각 국가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규제영향분석의 깊이에 대해 잘 파악하지는 못함
- 많은 국가들은 단일 기준 테스트를 진행(예: 기업의 비용과 예산의 영향)
- 일부 국가에서 정책입안자는 규제영향분석이 유용하더라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면제(exemptions) 사용

□ (제언)

- 규제영향분석 절차 범위와 이에 대한 감독은 초기 단계에 시작되어야 함. 이 단계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문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과 데이터를 도입하기 시작해야 함
- 감독기관은 규제기관이 고려할 가장 폭넓은 정책 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규제기관이 해당 문제의 규모를 포함하여 문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평가해야 함
- 규제와 그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은 영향의 크기, 경제 규모, 1인당 영향(impacts per capita), 정책의 유연성 및 정부의 상대적 지원과 관련되어야 함
- 한 국가가 정량화된 판단기준 값을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해당 값을 포함시키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근거해야 함
- 규제는 매우 긴급 상황에서만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면제해야 함
- 규제 개발 및 분석을 시간 및 자원 또한 정부의 역량에 따라 확장되어야 함.

규제영향분석의 요건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기술 확보가 중요

나. 전문가 발표 내용

□ Challenges in Delivering RIA(Jason Lange, Australia)

- (호주의 규제영향분석 모델) 호주의 규제개혁 총괄기구인 OPBR(규제모범관행규정국)이 호주의 규제영향분석(RIA) 모델 발표
 - 국무총리실과 내각 내 중앙 감독 기구
 - 의사 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자료의 가시선(line of sight)
 - 규제 영향이 미미하지 않은 경우 정책 결정 지점에서 필요한 규제영향분석
 - 게이트키퍼가 되기 전 먼저 코치(coach), 즉 규제영향분석 초안을 작성하고 증거 기반 정책을 홍보하는데 도움 제공

○ (독립적 검토)

-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지만, 독립적 검토(independent review)는 규제영향분석과 동등한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간되는 부처에서 규제영향분석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주장하기 매우 높은 수준의 인증을 요구함
- 현재 규제영향분석에서 OBPR은 독립적인 검토 평가하지 않으며, 그 안에 포함된 분석은 권고안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단계적 차이)

- 현재 설정에 따르면 분석 품질을 설명하는 규제에 대한 미준수(non-compliant), 준수(compliant), 모범관행(best practice) 등 세 가지 단계 존재
- 최소 합격 표시 이상의 노력을 권고하고 여기 포함된 분석 품질을 보다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다는 문제는 있음
- 전체 규제영향분석의 80% 이상이 모범사례라고 분류되며, 단계적 차이가

부족하면 순위를 매겨야 하는 압박감 발생

○ (행정부담 비용)

- 현재 설정은 제안서의 규제 부담의 정량화를 요구하고, 행정부담 비용(red tape costs)은 OBPR과 별도 합의되며 규제영향분석 분석틀에 대한 기관의 첫 번째 참여인 경우가 많음
- 부처들은 규제영향분석이 규제 비용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잘못 가정하는 경우가 있음
- 행정부담 비용은 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용과 편익(경제적, 배분성, 사회적 영향)을 포착하는 심층 분석에서 주목 받지 못할 수 있음

□ Proportionality in Regulatory Submissions in the UK(Philipp Aepler, UK RPC)

- (비례성) 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IA, Impact Assessment)와 사후 평가(PIR, Post Implementation Review)에서 '비례성'은 정책의 영향에 대한 수집(gathering), 분석(analysing), 면밀한 증거(scutinizing evidence) 등에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

① 증거의 수집 및 분석(gathering and analysing evidence)

- 영국의 독립적인 규제조사기관인 RPC는 규제영향분석과 사후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비례성 지침 발행
- 해당 지침은 구속력은 없으며 RPC가 영국 정부 부처로부터 기대하는 적절한 수준의 증거 및 분석에 대한 안내 제공
- 지침은 주요 사용자인 부처 및 규제 기관과의 광범위한 협의 후 2018~2019년에 업데이트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부처는 해당 지침의 공동 소유자이자 고객임
- 비례성 지침에 대한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고, 온라인 통계에 따르면 RPC 웹사이트(gov.uk/rpc)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 RPC 비례성 지침 등 주요 지침 자료의 공개적 접근성을 통한 투명성 확보

- Better Regulation Framework는 비례성의 요건에 대한 맥락을 설정

i) 모든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비용과 편익에 대해 비례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의회, 특히 조사위원회는 정책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치의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기대함

ii) 분석 수준은 해결하려는 문제에 비례해야 하며, 측정의 규모 및 영향력을 반영해야 함

- 영향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증거 및 분석 수준

i) 높은 수준의 증거

• 모든 중간 수준의 증거 요건을 충족하고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가능한 한 정량화 및 화폐가치화하는데 전념해야 하는 고자원(high-resource)의 작업

ii) 중간 수준의 증거

• 성과 및 이상적 영향에 대한 증거 제공
• 근거 자료의 주요 격차를 메우기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및 평가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공식 협의 및 인터뷰

iii) 낮은 수준의 증거

• 비교적 빠르고 내부에서 완성되는 가벼운 수준의 저자원(low-resource)의 작업
• 최소한 규제가 광범위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함

② 면밀한 증거(scrutinizing evidence)

- 기업에 연간균등순비용(EANDCB) ±5백만 파운드 이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설·개정되는 규제는 영국 규제정책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함

- 이에 대한 최소 판단기준 값은 이전에 1백만 파운드로 설정되었음. 이 수

준은 영국 정부의 전 부처에 걸친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2017년에 규제 체계의 다른 부분과 함께 변경되었으며, 규제 조사와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부담을 보다 비례성 있게 만들려는 의도

- 최소 5백만 파운드는 전체 규제의 약 10%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모든 규제 조치의 총 영향의 90%가 “잡힘(caught)”을 보장함

- PPC는 또한 비공식적으로 기준치 이하의 대책을 살펴보고, 부처와 협력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되지 않도록 함

다. 각국별 토론내용

○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별도의 판단기준(threshold)이 없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모든 규제에 대해 시행하기 전에 수행

○ (벨기에)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여전히 규제영향분석은 복잡한 절차로 인식되므로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요성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국가마다 상이함

○ (포르투갈) 규제영향분석은 해당 맥락에 의존적이므로, OECD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을 것을 의견 제시

- 분석 시스템이 중요하므로 통계적 분석을 통한 판단기준을 설정해야 함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이 어려운 상황이고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따라 관련 세미나 개최 예정

○ (유럽연합) 판단기준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고, 실제로 규제영향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모범 관행(best practice)은 규제영향분석뿐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 (오스트리아) 매년 신설 또는 변경되는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도 중요하지만 누적되는 규제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태국)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면제 기준이 무엇

인지,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태국에 적용해야 할지 고민

- (스위스) 다중 기준 테스트를 예비적인 규제영향분석에 도입하고 결과에 따른 심층분석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을 분류함. 내년 4월에 스위스의 경험 발표 예정
- (헝가리)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요구되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
- (덴마크) 영국 RPC에서 발표한 1백만 파운드~5백만 파운드 기준에 대한 부연 설명 필요
- 전문가 답변 내용
 - (Philipp Aepler, UK RPC)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시된 EANDCB는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을 측정하는 연간균등순비용을 의미하며, ±5백만 파운드 이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영국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검토받아야 함
 - (Jason Lange, Australia) 판단기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온 문제로 각 국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며, OECD 서베이에도 나타나듯 국가마다 다양하게 규제영향분석을 활용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관리와 조정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며 핵심 역할을 이행하고, 순위 시스템도 평가의 일부로 부처 내에서 수행 가능함

3. 모범규제관행 원칙 :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가. OECD 발표 내용(Nick Malyshev, Paul Davidson)

□ 사무국 추진 현황

- (사후 모범관행 원칙 발표) 2018년 11월 및 2019년 4월 RPC 회의에서 사후(ex post) 모범관행 원칙 초안이 제시된 후, 협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발표됨
- 2019년 5월~7월 동안 협의한 후 피드백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됨

- (개선사항) 사무국은 원칙이 중요한 특징을 포착한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이에 따라 사전분석과 사후분석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강조하고,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 및 규제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포함하였음

□ 왜 기존 규제를 검토하는가?

- (규제 검토의 필요성) 사후평가는 기존 규제를 어떻게 리뷰할 것인가의 문제
 - 규제의 저장(stock)은 모든 국가에서 광범위함
 - 규제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규제의 영향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음
 - 규제의 종합적 영향 이해
 - 새로운 규제의 설계 및 관리 개선
 - 규제 및 정부에 대한 공적지원 제공

□ 왜 원칙이 필요한가?

- (원칙의 필요성)
 - 사후평가의 중요성은 2012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알려짐
 - 사후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다른 규제 관리, 특히 사전평가에 비해 개발되지 않음
 - 실제로 규제의 사후평가는 제안단계에서 수행하는 평가보다 더 까다롭고 복잡함
 - 사후평가는 정치적 또는 관료적 저항이 더 많을 수 있음

□ 모범 관행 원칙

- (주요 원칙) 규제 주기에서 사후평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규제

의 실제 결과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거버넌스) 사전 평가뿐 아니라 사후 평가도 정부 내 감독 및 책임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기관 예산에는 규제평가 비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함
- (광범위한 접근의 평가) 규제 사후평가에 대한 접근방식으로는 정기 심사(programmed reviews), 일회성 감독(ad-hoc reviews), 지속적 관리(ongoing management)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개별적 평가 거버넌스) 해당 규제의 성격과 중요성에 따른 평가 접근법이 필요하며, 심층적 평가를 위해 투명성이 중요함
- (평가에서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대안에 대해 평가해야 함
- (방법론) 평가는 비용-편익분석으로 우선 수행되어야 하며, 정량적 평가를 권장
- (협약) 모든 평가는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협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민사회가 접근 가능해야 함
 - 협약의 성격과 범위는 규제의 중요성 및 공익의 민감성 정도에 비례함
- (우선순위 및 순서) 경제 또는 지역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시민 또는 조직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제의 명쾌한 증거가 있는 규제를 검토하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
- (역량 향상) 직원의 교육과 채용을 통해 역량을 개발해야 함
- (혁신적 리더십) 규제의 사후 평가 시스템 설계 및 지속적 효과를 위해 정치 지도자의 지원이 필수적임

나. 각국별 토론내용

- (캐나다) 캐나다는 경제활동 분야에 기반한 규제, 테마 기반의 규제 등 분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 감독기구가 심사하고 있음

- (멕시코) 무역, 제조업, 건설업, 운수 등에 대한 기존의 규제평가, 경쟁영향평가 등과 더불어 세계은행과 함께 개발한 사후분석 수행
 - 최근 여러 분야에 선택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사후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규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
- (덴마크)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포럼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4. 모범규제관행 원칙 : 원스톱샵(One-stop shops)

가. OECD 발표 내용(Christiane Arndt-Bascle, Paul Davidson)

□ 추진 현황

- (원칙 수립 예고) 2019-2020 Programme of Work and Budget에서 시민 및 비즈니스 원스톱샵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모범 관행 원칙 수립 예고
- (논의) 2018년 11월 RPC 회의에서 범위 지정 및 2019년 4월 RPC 회의에서 분석 프레임워크 논의
- (발표) RPC 대표자들과 사례연구 참가자에게 받은 피드백을 통해 2019년 9월 원칙 포함한 초안 보고서 발표 및 2019년 11월 RPC 승인을 위한 최종 보고서 발표

□ 연구 사례

- (캐나다의 BizPaL 및 Service Canada)
 - Service Canada는 고용보험과 연금계획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
 - BizPaL은 캐나다 기업이 사업 시작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

- (독일의 Informational portal for employers)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고용주에게 사회보장권과 의무에 관한 정보 제공
- (멕시코의 Tu Empresa) 사업의 개업, 운영, 폐업 절차 정보 제공
- (노르웨이의 Altinn)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온라인으로 관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전자 정부 포털
 - 설립부터 폐업까지의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정보 제공
- (포르투갈의 ePortugal) 시민과 기업을 위한 정보, 지침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정책 정보 제공
- (영국의 GOV.UK and Primary Authority)
 - GOV.UK는 시민과 기업 관련 정책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정보 제공
 - Primary Authority 기업의 특정 요구에 맞게 법적 조언 제공

모범 관행 원칙

- (중요 원칙) 원스톱샵은 행정 간소화 전략으로 형성해야 하며, 사용자 중심이고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해야 함
- (특정 원칙)
 - (정치적 헌신) 강력하고 장기적인 정치적 지원 보장, 원스톱샵 개발·이행·개선 등에 관한 정치·행정 차원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축
 - (리더십) 관리자는 원스톱샵 목표에 전념해야 하며, 목표가 바뀔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필요, 현실적인 계획 수립,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자원 확보
 - (법적 틀)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보장하고 원스톱샵이 사회에 대한 잠재적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 틀 조정
 - (협력 및 조정) 원스톱샵을 계획하는 기업은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 채널 필요, 모든 참여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강력한 관계 구

축 및 영구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에 중점을 둠

- (역할 명확성) 원스톱샵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기대치를 명확하게 설정, 포커스 그룹 및 설문조사와 파일럿에 따라 잠재적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
- (거버넌스) 모든 기관의 정치적 헌신을 얻을 수 있도록 원스톱샵 거버넌스 구조 설계, 단일 유기체가 운영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버넌스 메커니즘 개발
- (협업) 이용자 입장에서 원스톱샵의 최선책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 협의, 서비스 시작 전 파일럿 단계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사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확인, 원스톱샵 구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식
-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적 고려) 잠재적 문제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활용,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 및 지원 활용
- (인적 자본) 원스톱샵 직원 교육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에 중점
- (모니터링 및 평가) 정량적·정성적 지표 및 평가 방법 확립, 지속적 개선 절차 구현, 중요한 변경 전 적절한 영향 평가

논의할 점

- 비교적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규제 설계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기존과 다른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나. 패널 토론

제1 패널토론(Tina Green, Canada)

- 캐나다의 BizPal 사례 공유

- (설립) 2005년 설립되었고 연방·주·자치주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주

사용자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임

- (개요) 캐나다 기업은 BizPal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허가 와 라이선스 및 취득 방법을 제공하였으며, 14,450개 이상의 허가 및 면허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음
- (핵심사항) 유연한 거버넌스 모델이 BizPal의 원활한 운영 및 확장에 중요한 도구임이며, BizPal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은 개방적인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됨

○ 캐나다의 Service Canada 사례 공유

- (설립) 1998년부터 개발하여 2005년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산하 기관으로 고용사회발전법(DESDA)에 의해 운영됨
- (개요) 캐나다 정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사회보험번호,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취약계층 관련 정보, 연금계획 등 제공)
- (핵심사항)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 One-stop shops에 필요한 서비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갖춘 광범위한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

□ 제2 패널토론(Maria Rosenberg, Norway)

○ 노르웨이 Altinn 사례 공유

- 2003년 3개의 정부기관 간의 협력으로 시작되어 16년 후 Altinn은 모든 주요 정부 기관에 적용
- 사업자, 개인, 공공기관 간의 디지털 다이얼로그를 위한 인터넷 포털이며, 가장 정교한 원스톱샵 모델을 갖추고 있음
- 거래 및 정보를 위한 일반적인 웹 포털이자 정부기관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함
- Altinn 사용자(기업/시민)는 디지털 대화로 양식을 제출하고 공공기관으로

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종이에서 디지털 대화로의 전환을 통해 물리적 사무실을 대체함

- (핵심사항) Altinn과 전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통합이 성공 요인 중 하나이며, 비즈니스 및 산업용 전문 소프트웨어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를 통해 기업 자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정부 기관으로 전송됨

다. 향후계획

- 사무국이 11월 27일까지 2019년도 규제정책위원회의 오늘 발표 자료에 대한 코멘트를 마감

5. 규제 정책에서 의회의 역할(The role of parliament in regulatory policy)

< Wolfgang Hiller, 유럽의회연구소(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발표내용 >

- (주요 내용) 모든 EU 국가들과 OECD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한 사전, 사후 규제 평가를 시행 중인 의회에 대한 조사
 - 유럽의회 입법과정에서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개별국가 의회 등 입법 주체들의 공동입법과정에서 각각의 역할과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음
- 각 국가의 의회는 입법 선진화(Better Law-Makin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입법선진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식을 교류하고 이행하는 작업이 필요함
 - 규제 영향 평가와 유럽의 부가가치에 대한 EPRS 이사회는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예측, 유럽의 부가가치(European added value), 사전 영향평가, 사후 평가, 유럽의회의 관점으로 총 5가지의 단위로 구성
 - 이를 위해 Wolfgang Hiller는 28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OECD 일부국가(캐나다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스위스 · 터키), 기타국가(알바니아 · 몰도바 · 북마케도니아 · 산마리노) 등의 국가를 조사

- 이중 3개 국가에서 의회가 개별적인 규제 사전 평가를, 6개 국가에서 의회가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2개 국가에서 의회가 규제영향평가와 유사한 형태의 업무에 관여

- 의회의 사후규제영향평가(ex-post evaluation)의 경우, 16개 EU 국가에서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5개 EU 국가는 소극적이거나 작은 규모로 진행, 벨기에 · 프랑스 등 7개 EU국가와 캐나다 · 몰도바 · 스위스는 적극적인 사후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EU 회원국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영국
OECD 국가	캐나다, 스위스
기타국가	몰도바

- 사후 규제영향평가 형태를 공식적인(formal) 형태, 비공식적인(informal) 형태, 혼합된(Mixed) 형태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공식적인 (formal) 형태	벨기에, 캐나다
비공식적인 (informal) 형태	프랑스, 네덜란드.
혼합 형태 (Mixed) 형태	스위스, 폴란드

- 사후규제영향평가 사례: 스위스

- 스위스 의회는 사전규제평가의 선두두자로서 1990년대부터 사후 규제영향 평가를 진행해왔음
- 스위스의 사후규제영향평가는 헌법으로 보장되었으며, 의회의 조정위원회 (Parliamentary control committees)에 의해 규제 영향 평가를 요청받아 이행을 하는 형태이며, 매년 3-4개의 큰 평가를 진행

- 의회의 사전규제영향평가(ex-ante evaluation)의 경우, 17개 EU 국가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 · 프랑스 등 8개 EU 국가는 소극적이거나 작은 규모로 시행, 캐나다와 불가리아 · 핀란드 등 4개의 EU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행

EU 회원국	고유 규제영향평가를 보유한 국가	불가리아,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	-------------------	---------------------

	사전규제영향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보유한 국가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페인
OECD 국가	캐나다	

- 사전규제영향평가 사례: 핀란드

- 사전규제영향평가를 시행하는 핀란드의 경제분석팀은 연구소 내에 사전규제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능이 있음

- 경제분석 모델에 기반한 미시경제, 거시경제 분석팀을 갖추고 있음

- 주요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은 (핀란드 통계청) 조세와 사회 보장 입법을 위한 모형으로 분석 진행

- 규제정책에 있어 의회는 행정부를 관찰 · 감독하고 입법 기능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 성과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법 선진화의 목표 달성에 기여

- 각 국가별로 규제 정책에 대한 의회의 역할은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 있음

6. 규제와 신기술(Regulation and emerging technologies)

가. OECD 사무국(David Winickoff) : 규제와 새로운 기술

- 규제와 신기술과 관련한 두가지 주요분야에 대해 2년간의 업무 프로그램을 통해 NER과 다른 OECD 위원회들(CSTP/BNCT, ITF, CDEP 등)과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

- ① (분야1 : 신기술에 대한 규제방법) 규제를 위한 적절한 시기, 올바른 접근 방식, 목적에 맞게 어떻게 규제를 적정히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 ② (분야2 : 효과적 규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이용) 신기술을 어떻게 규제설계 및 집행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 주요 분야별 진행중인 작업 현황

① (분야1 : 새로운 기술 규제방법)

- 사례연구(한국 KDI와 공동연구) : 규제적용 범위와 현재 규제반응의 다양성 확인

- 규제영향평가 (RIA)의 우수사례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규제영향평가(RIA) 수행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 디지털화 시대의 규제 유효성에 관한 안내책자

② (분야2 : 효과적 규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이용)

- 규제 평가 및 계획을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 규제집행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활용에 관한 보고서

-> 두 분야를 포괄하여 과학, 기술 및 혁신부서(STI/STP)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 STI/SLP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내용

○ (목적) 미래의 OECD 작업을 위한 주요 격차와 기회를 파악하여 신기술 규제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강조

○ (주요내용) BNCT(바이오, 나노 및 통합기술) 작업 분야로 신경기술, 유전자 편집, 국민 수용성, 진행관리(STI Outlook 2018) 등을 수행

- 대중의 관심과 신뢰, 불확실성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도전, 윤리적 다원성, 과학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어려움, 개인정보 등 다양한 현안들과 맞물려 있어 기술관리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

□ OECD 작업결과 초안

① 새로운 기술로부터 유래된 다수의 혁신적 영향 및 주요 문제점

-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 기업 전략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디지털 개인정보 및 보안, 경쟁문제

- 인공지능에서 야기되는 법적 책임 문제
- 사회-윤리학적 문제(예 : 인공지능과 관련된 잠재적 편견 및 차별의 위험성)

② 새로운 기술들과 관련된 다수의 관리 및 규제의 도전과제

- 진행속도의 문제 (Marchant 외. 2011)
- 불확실한 기술 방향의 처리
- 현재의 규제 체제에 대한 도전 과제들
- 규제의 시행에 대한 도전 과제들, 제도적 및 다방면적 도전 과제들

③ 규제적 접근법들의 다양성

④ 혁신으로부터 위 단계인 “예비적 관리” 접근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

* 예상(언제?), 포함(누구를?), 방향성(무엇을?, 왜?)이 함께 고려 및 관리되어야 함

=> (결론) 정부의 관리 및 규제적 도전 과제들을 더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술의 분야는 다르지만 새로운 기술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적 교훈이 있음

□ 규제 및 새로운 기술의 개선을 위한 전망

① “관리 혁신”에 관한 OECD 컨퍼런스 (1월 13~14일): STI and METI 공동 프로젝트

② 규제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RPC/NER 공동 원탁회의(2020년 4월)

③ 증거-기반 규정을 위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념정리 노트 (활동 계획의 두 번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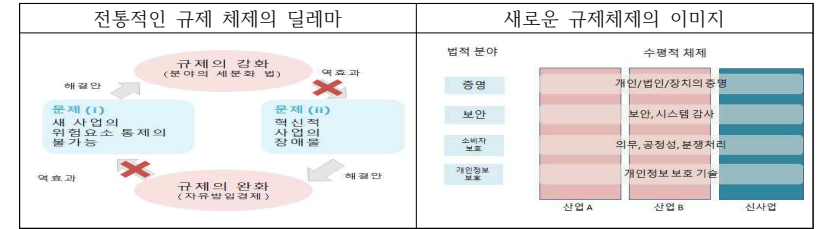
④ 두 편의 출판물 발행 중

- 새로운 기술 규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개요 (19회 RPC 회의에서 발표 - 2018년 11월) [GOV/RPC(201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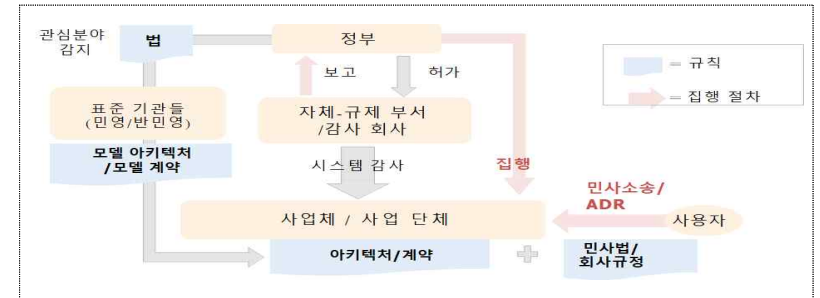
- 규제와 IRC에 관한 보고서: 디지털 변화로 인하여 제기되는 도전 과제들 (20회 RPC 회의에서 발표 - 2019년 4월) [GOV/RPC/RD(2019)2]

나. 일본 경제산업성(Hiroki Habuka) : 사이버-실제환경 통합사회를 위한 새 관리모델

- 디지털 경제에서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적 접근
 -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혁신 친화적인 정책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혁신의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함
 - 이미 많은 국가들이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융통성 있고, 전체적이고, 신속한 정책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에서의 관리는 혁신 친화적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상호 호환표준, 체제 및 규제적 협업은 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디지털 사회에서 두 종류의 관리격차
 - 디지털 사회에서는 급변하는 기술들과 사업모델 때문에, 두 종류의 관리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 1) 법이 새 사업의 위험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2) 법이 혁신적 사업의 장애물이 됨
 - 현재 규제 체제하에서, 한 가지의 관리 격차들의 해결안(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은 다른 관리격차를 확대 시키는 결과를 초래
 - 기술 중립적, 안전,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과 같이 타당한 목표에 중점을 둔 수평적 규제체제가 필요



- 새로운 관리시스템(규제체제)의 구조 및 계획
 - 법은 최소 성능의 요구사항 및 필요한 원칙, 보호받아야 할 사항들을 정의함
 - 표준 기관들은(private/half private) 모델 아키텍처 또는 모델계약을 확립
 - 각 사업체 또는 사업단체는 모델 아키텍처 또는 모델계약을 기반으로 그들 고유의 아키텍처와 계약서를 만들어 냄
 - 시스템 감사는 자체-규제 부서 또는 감사 회사로부터 수행되어야 하며, 집행은 감독관청 또는 민사법(소송 및 ADR)에 의하여 이행됨



- 표준화 된 모델 아키텍처를 통해 주요 관리분야(증명, 보안 및 안전,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등)를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에서 상호 연동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짐

구 분	사이버 공간(아키텍처)	실제 공간(아키텍처)
증명	개인/법인/장치 증명	등록, 허가 등
보안 및 안전	사이버, 실시간 데이터추적	정보보안, 시설보안 등
소비자 보호	공정성, 분쟁처리	적합성, 계약의무, 전달의무 등
개인정보	암호화, 데이터이동	데이터관리, 개인동의, 상호교류 제한
기타 원칙들	재정, 에너지, 이동 등	은행법, 발전소법, 운송법 등



□ 새로운 관리혁신의 개요

① (변화) 사이버-실제 환경이 통합된 사회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실제 세계에서 활동을 정의하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이 결정됨

-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변화,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독점 또는 소수독점제 현상과 사업의 국제화가 이루어 짐

② (도전 과제) 해당 규정이 사업체 및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분야별(개인, 산업, IoT 등) 데이터 축적 현상이 발생

③ (해결 방안) 일반적 관리부터, 규칙 설정, 모니터링, 집행, 국제상호 호환 등 각 분야별 유기적 연동이 요구됨

- (규칙) 목표 기반, 기술-중립법, 공동규정 마련 등

-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인공지능 설명가능, 시스템 감사 등

- (집행) DPA, 디자인 준수, 온라인 분쟁처리 등

- (국제 상호호환) 국제적 규칙제정, 조사 및 진행의 협업 등

□ 향후 계획

① (국내 팀 구성) 새 관리모델을 위한 전문가와 아키텍처 디자인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공동 논의

② (국제적 협업) OECD, G20, WEF 등 국제단체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 개혁을 시작

< 국가별 논의내용 >

□ (영국) 올해 초, 영국도 유례없이 마주한 산업혁명 규제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였고, 영국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대처가 요구됨

○ 혁신과 규제를 위한 기본적 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며, 이 부분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RPC와 OECD가 실행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 (네덜란드) 신기술을 위한 규제가 발전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하고 싶음

□ (일본) 이 시스템을 작년 시작하였고 지금은 시작단계에 있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단계임. 이 시스템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해 나갈 것임

□ (태국)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며, 새로운 데이터 개인정보 법안을 가지고 있음. 정부, 민간부분, 혁신자들 간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며, 법률적 근거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

7. 동남아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

가. 사무국 발표 내용 : 제5차 ASEAN GRPN 및 태국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

○ (배경) OECD는 다년간 APEC, ASEAN GRPN 및 ASEAN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규제개혁에 기여해왔음

- 이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2025 비전 중 '경쟁력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A competitive, innovative and dynamic ASEAN)' 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관행을 만드는 것' 의 일환이기도 함

○ (제5차 ASEAN GRPN)

- (개요) 제5차 ASEAN GRPN이 2019년 7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의 협조를 받아 개최되었으며, ASEAN, OECD 회원국 및 역내·국제기구 등 총 75개 회원(member official)이 참여

- (주요내용) ‘신기술 시대의 모범규제’를 주제로, ASEAN 국가의 규제설계와 관한 도전과 기회뿐 아니라 국제규제협력, 사후평가에 대해 논의하였음
- (부속회의) 뿐만 아니라, 영국 상품안전표준청(OPSS,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과 태국 내각사무처(OCS, 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는 각각 ‘기술혁신으로 인한 규제 개선’에 관한 워크숍 및 700명 가량의 태국 공무원 대상 신기술 관련 모범규제 원칙 및 국제 사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태국 업데이트)

- 태국 규제정책에 대한 OECD 심사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첫 심사로 2019년 4월부터 시작되었고, 태국에서는 모범규제관행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2019년 5월 내각의 승인을 받았으며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동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
- 태국 규제정책 심사는 모범규제관행의 이행에 앞서 선제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심사와는 다르며, 과거와 미래의 규제정책에 대한 진단과 중·장기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나. 사무국 발표 내용 : 필리핀 RIA에 대한 검토

□ (배경) 필리핀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특히 기업을 위한 규제개선을 시작

○ (정치적지지) 두테르테 대통령의 10대 사회경제적 아젠다 중 3번은 “기업활동 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이며, 2018년 기업환경 개선법(Ease of Doing Business Act 2018)을 제정함

□ 필리핀의 규제개혁

○ (추진경과)

- 1) 2005년 : 필리핀 국가 경쟁력을 위한 민관 T/F (Public-Private Sector T/F on Philippine Competitiveness) 구성
- 2) 2007년 : 규제감축법(Anti-Red Tape Act) 제정 - 행정처리 기한을 규정

3) 2011년 : 국가경쟁력 위원회(NCC,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출범

4) 2012년 :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쟁력 제고’ (ICIG, Increasing Competitive -ness for Inclusive Growth)의 일환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임시로 시행

5) 2016년 : ① ‘규제현대화’ (MGR, Modernizing Government Regulation) 작업

② 국가경쟁력 위원회의 ‘규제 감축 프로젝트’ (Project Repeal)

- 60개 기관의 6,000개 규제 중 10%는 개정 또는 유지, 90%를 폐지
- 증거기반 규제체계를 제도화
- 표준비용모델 개발을 시작

○ (규제총괄기관) 기업환경 개선법(2018)에 따라 설립된 ARTA(Anti-Red Tape Authority)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 1)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 추진
- 2) 행정서비스의 전달 개선
- 3) 규제영향분석을 평가하는 중앙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규제영향분석) 필리핀의 규제영향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1) 시행 초기단계에 있음
- 2) 임시시행이므로 효과가 제한적임
- 3) 기존규제 정비, 규제비용 추산 및 감축 등에 초점을 둠
- 4) 각 부처내 규제개선부서(Better Regulation Unit)로 전문성이 분산되어 있음
- 5) 규제영향분석 절차 : 부처에서 규제영향분석 시행(의무) → ARTA에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 ARTA가 규제영향분석서 승인 → 필요시 의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공

○ (권고사항) 사무국은 필리핀 규제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단기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단기권고사항)

- 1) 규제영향평가의 임시시행을 끝내고 정식시행을 시작한다
- 2) 규제영향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 대한 적용을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 3) ARTA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 4) 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개선한다

- (중기권고사항)

- 1) 비용 및 부담의 감축, 경쟁력 평가 등에서 초점을 옮겨 규제에 인한 편익 및 규제대안을 고려한다
- 2) 투명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관행을 만든다
- 3) 역량 강화 및 전(全)정부적 접근
 -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로 정착시킨다
 - ARTA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육성한다
- 4)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의 운영을 점검한다
- 5)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규제의 사이클을 완성한다

다. 국가별 논의 내용

○ (포르투갈) 필리핀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포르투갈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규제감축(red-tape) 및 현대화 작업을 한 경험이 있음. 그 경험에 비추어 규제영향평가는 좋은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는 도구이며, 필리핀 규제개혁에 도움이 될 것

○ (벨기에) 규제영향분석은 복잡한 작업이므로, 규제비용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는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

○ (브라질) 사후평가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생략해도 되는지?

- (사무국) 필리핀 사례에서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기존규제를 감축하였으나, 모든 기존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함

○ (브라질) 브라질의 경우, 기존규제가 매우 많은데 이를 감축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를 거쳐야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됨

- (사무국) 모든 기존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비례성 (proportionality)을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이 권장됨. 또한, 유사한 규제를 묶어 한번에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음

- (독일) 정부 관료로서 규제를 입안할 때 해당 규제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체계를 가능한 간소화할 것이 요구됨

○ 회원국 동의로 문서가 승인됨.